

#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세칙 개정안 신·구조문 대비표

**[제 5절 장학금 지급]**

현재	개정안	비고
<p><b>제67조(장학금)</b> 사원의 대학 취학자녀에 대한 학업장려 및 생활 안정을 목적으로 장학금을 지급한다.</p> <p><b>제68조(용어의 정의)</b>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</p> <p>①~③ &lt;생략&gt;</p> <p><b>제69조(지급대상)</b> ①지급대상은 다음 각호와 같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현재 대학생 취학자녀를 둔 사원</li> <li>2. 1999년 이후 회사로부터 대학생 자녀 학자금을 대부 받은 자로서 2003년 3월 이후 학자금 원금 상환일이 도래하는 사원</li> <li>3. 기타 협의회에서 결정, 인정한 경우</li> </ol> <p>②~④ &lt;생략&gt;</p> <p><b>제70조(지급기준)</b> ①국내대학 취학 자녀의 장학금은 제68조 3항에 의한 실제 납입액의 75%를 지급하며, 국외대학 자녀 장학금은 국내 연세대학교 인문/사회, 인문, 상경, 생활/체육, 이학/간호, 공학, 음악, 의/치예, 생명시스템 계열 중 유사계열 학자금의 75%를 초과할 수 없다. 다만, 이와 유사한 계열이 없는 경우에는 연세대학교 '이학' 계열 학자금의 75%를 초과할 수 없다.(2010.11.09)</p> <p>②~③ &lt;생략&gt;</p> <p><b>제71조(지급제한)</b> ①삭제(2010.11.09 개정)</p> <p>②~③ &lt;생략&gt;</p>	<p><b>제67조(장학금) &lt;삭제&gt;</b></p> <p><b>제68조(용어의 정의) &lt;삭제&gt;</b></p> <p><b>제69조(지급대상) &lt;삭제&gt;</b></p> <p><b>제70조(지급기준) &lt;삭제&gt;</b></p> <p><b>제71조(지급제한) &lt;삭제&gt;</b></p>	<p>장학금 제도 폐지</p>

**[제 5절 장학금 지급]**

현재	개정안	비고
<p><b>제72조(신청절차)</b> ①장학금을 지급 받고자 하는 사원은 장학금 지급신청서(별지제4호 서식)와 학자금 납부고지서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.(2010.11.09 개정)</p> <p>②~④ &lt;생략&gt;</p>	<p><b>제72조(신청절차) &lt;삭제&gt;</b></p>	<p>장학금 제도 폐지</p>
<p><b>제73조(지급방법)</b> ①장학금은 보수지급일에 사원 급여 지정 계좌에 입금하며 지급액 결정시 1,000원 미만은 절사한다.</p>	<p><b>제73조(지급방법) &lt;삭제&gt;</b></p>	

**[제 8절 선택적 복지제도]**

현재	개정안	비고
<p><b>제8조(선택적 복지제도)</b> ①사원은 개인별 정하여진 금액의 한도내에서 필요한 항목을 선택하여 이용할 수 있다.</p> <p>②~⑤ &lt;생략&gt;</p> <p>⑥복지포인트는 복지카드를 통해 부여하되, 대학학자금의 경우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.</p> <p>⑦복지포인트 1포인트는 통화기준으로 환산시 1원으로 한다. (2012. 1. 1 개정)</p>	<p><b>제8조(선택적 복지제도)</b> ①사원은 개인별 정하여진 금액의 한도내에서 필요한 항목을 선택하여 이용할 수 있다.</p> <p>②~⑤ &lt;생략&gt;</p> <p>⑥<u>복지포인트는 복지카드를 통해 부여한다.</u></p> <p>⑦복지포인트 1포인트는 통화기준으로 환산시 1원으로 한다. (2012. 1. 1 개정)</p>	<p>장학금 제도 폐지</p>

**[부칙]**

현재	개정안	비고
	<p><b>부칙</b></p> <p><u>1조(시행일) 이 세칙은 2014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.</u></p> <p><u>2조(경과조치) 2012년 1월 1일자 시행한 부칙 중 제 2조 제②항의 대학자녀학자금 및 본인학자금은 폐지한다.</u></p>	<p>장학금 제도 폐지</p>

**[별표 1]**

현재			개정안			비고
대학생 자녀 장학금	사원(등기이사,무급휴직자 제외) 대학생자녀 - 자녀 1인당 최대 8학기, 사원1인당 최대 16학기 - 고등교육법 적용,외국대학,기타 인정대학	납부액의 75%	<삭제>	<삭제>	<삭제>	장학금 제도 폐지

**[별지 제4호 서식]**

현재	개정안	비고
대학생 장학금 신청서  * 이하 서식 생략	<u>대학생 장학금 신청서</u> <삭제>	장학금 제도 폐지